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1월 13일

CUOMO 주지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소비자를 원치 않은 우편물로부터 보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새로운 오토바이 관련 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개의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뉴욕 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세 개의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뉴욕 주민들의 재정과 소유물을 사기와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사기성 계약에 빠지지 않도록 원치않는 광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은 오토바이의 부당 압류를 막기 위해 등록 및 주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들을 대신해 이 법안 마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 발기인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최초 법안(A3601/S4301)은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편의 수표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해줄 것입니다. 이러한 편의 수표는 종종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 소지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표로 사기 대상을 찾는 무단 사용자들에게는 손쉬운 표적입니다. 이번 법은 자신들의 신용카드 계정과 관련하여 원치 않은 편의 수표가 무단 사용된 경우 카드소지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Martin J. Golde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금융 보안을 해치는 신용사기꾼으로부터 근면성실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Alan Maisel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원치 않는 편의 수표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카드소지자를 면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가 발의한 법안에 서명하심으로써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소비자들은 본인들도 모른 채 또는 본인들의 허락 없이 발송된 이러한 편의 수표가 부당하게 사용된 것에 책임을 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Korean

두 번째 서명 법안(A309-A/S777-A)은 우편물을 통해 기념품 판매 제의를 할 경우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권유 사항인 경우 우편물 상단에 커다란 굵은체로 “SOLICITATION”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종종 기념품 판매를 위해 많은 원치 않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가족들로 하여금 요청한 정보 중에서 원치 않는 물건 구입 요청서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초 위반 시 최고 500 달러의 과징금에 처해지고 이후 위반 시 최고 1,000 달러의 과징금에 처해집니다.

Charles J. Fuschillo, Jr.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엄청난 양의 정보와 구입 요청서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 이러한 “요청서”는 무단 구입 요청서라기 보다 서비스 청구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념품 구입 요청서에 “solicitation”이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한다면 가족들이 애도 기간 동안 갈취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Jeffrey Dinowitz 주하원의원 겸 소비자문제및보호 주의회 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해주셔서 기쁩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힘들어할 때 사람들은 대개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책임에 빠져듭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물건 구입 제안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구입 물품이 그에 합당한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원치 않는 기념품 구입 제의는 solicitation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명 법안(A3598/S97)은 오토바이 소유자가 오토바이 등록 시 확인 불명의 자동차 부품과 관련한 법을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토바이의 확인 번호판 또는 오토바이 부품을 변경, 외관 훼손 또는 제거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오토바이 소유자들에게서 오토바이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오토바이 등록 시 확인 불명의 오토바이 부품과 관련한 법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Patrick M. Gallivan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기를 저지르는 범인보다 아무런 검색을 채지 못하는 무고한 소비자들이 소비자 사기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구입자들에게 나쁜 딜러로부터 자신과 오토바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오토바이 압류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Donna Lupardo 주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께서 이 법안에 서명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이 서명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를 압류 당하는 고통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토바이 등록 시 또는 오토바이 등록 갱신 시 차량식별번호(VIN)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DMV 프로세스를 알려준다면 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 소중한 재산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